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방위산업기술보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방위산업기술 보호법」이 일부 개정(법률 제17683호, ‘20.12.22. 공포, ’21. 6.23. 시행)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제때 마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1조上 “방위사업청장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권 부여”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조사권을 명시함. (제16조)
- 나. 조사에 필요한 문서서식을 부령에 포함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하고, 조사 연기 절차·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함. (제16조의2)
- 다. 실태조사간 관련기관과의 업무관계를 명확히 명시하고, 포상금 지급 가능 기관을 확대함. (제17조, 제22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본문 중 “조치를”을 “조사 및 조치를”로, “조치 요청서”를 “조사 및 조치 요청서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조치를”을 “조사 및 조치를”로, “조치 요청서”를 “조사 및 조치 요청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조치 요청”을 “조사 및 조치 요청”으로, “조치를”을 “조사 및 조치를”로 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조사) ① 법 제11조의2제9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출석요구서, 보고요구서, 자료제출요구서 및 현장출입조사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.

②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한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발송확인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11조의2제10항에서 “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때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

1.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
2.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

우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의 경우 장부·서류 및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서류가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영치(領置)된 경우

3. 조사대상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이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④ 법 제11조의2제10항에 따라 연기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 등을 보낸 기관의 장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조사의 연기요청을 받은 때에는 연기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⑥ 조사대상자가 법 제11조의2제1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의견제출서를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⑦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2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조사결과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실태조사의 실시와 관련하여”를 “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사범위·대상, 시행방법 등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,”로, “관계”

를 “정보수사기관 이외의 관계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1항”을 “법 제17조제1항”으로, “대상자를”을 “대상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방위사업청장은”을 “정부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 등) ①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 또는 조치 요청서를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거나 조치를 요청한 후 지체 없이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 또는 조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	제16조(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 등) ① ----- ----- ----- 조사 및 조치를 ----- ----- 조치 및 조치 요청서 ----- ----- .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조사 및 조치를 ----- --- 조사 및 조치 요청서----- ---
② 방위사업청장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10조 각 호의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료요청 등 상호협조하여 필요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 조사 및 조치 요청----- -----

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<신 설>

-- 조사 및 조치를 --.

제16조의2(조사) ① 법 제11조의2 제9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출석요구서, 보고요구서, 자료제출요구서 및 현장출입조사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.

②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한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발송확인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11조의2제10항에서 “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때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

1.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

2.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의 경우 장부·서류 및 그 밖의 조사에

필요한 서류가 권한이 있는
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영
치(領置)된 경우

3. 조사대상자가 개인인 경우
그 개인이 질병이나 장기 출
장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곤
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④ 법 제11조의2제10항에 따라
연기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
조사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 등
을 보낸 기관의 장에게 국방부
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를 제
출하여야 한다.

⑤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
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조사
의 연기요청을 받은 때에는 연
기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
에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
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연
기 신청 결과 통지서를 조사대
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⑥ 조사대상자가 법 제11조의2
제1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는
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
의견제출서를 방위사업청장 또
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

제17조(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
실태조사) ① (생략)
② 방위사업청장은 실태조사의
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
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
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22조(방위산업기술 보호 포상
등)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
조제1항에 따른 포상 및 포상금
지급 대상자를 공고를 통하여
신청한 자나 관련 기관의 추천
을 받은 자 중에서 선정한다.
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
른 신청이나 추천을 받은 경우
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포상 및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

하여야 한다.

⑦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
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2
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지하는
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
조사결과통지서를 조사대상자
에게 발송하여야 한다.

제17조(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
실태조사) ① (현행과 같음)
② ----- 실태조사를
실시하는 경우 정보수사기관의
장과 협의하여 조사범위·대상,
시행방법 등 추진계획을 수립하
고 실태조사에 필요한 협조를
받을 수 있으며, --- 정보수사
기관 이외의 관계 ---.

제22조(방위산업기술 보호 포상
등) ① 법 제17조제1항-----

--- 대상자는 -----

-----.

② 정부는 -----

금액을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15 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신청인 또는 추천기관에 알려야 한다.	----- ----- -----.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전력정책과	
연 락 처	(02) 748 - 5612